

고 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-24호

**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4호(2017.11.1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7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 칭 :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

나. 면 적 : 40,749.2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 :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종삼)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30(가락동), 3층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**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4. 2. 28.****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**

※ 해당없음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높이 ·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연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층수	최고높이(m)	용도
	용적률(%)	건폐율(%)			
37,446.03	189,987.6806	5,710.2446	지하4층, 지상35층	99.85m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	299.86	15.25			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공급 구분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					
			59A	59B	59C	75A	84A	84A-1	84B	102A
계	9	1,101	59.821 ㎡	59.0976 ㎡	59.3127 ㎡	75.7059 ㎡	84.3663 ㎡	84.3663 ㎡	84.8827 ㎡	102.3319 ㎡
분양		981	243	19	117	80	171	14	192	145
임대		120	42	4	41	28	3	-	2	-

9.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		종류	규모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종류	규모	공원	3,303.17	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전부설치 하되, 「도정법」 제65조 규정에 따 라 무상양도

10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가.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
나.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해당 관계법규

※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도서는 송과구청 주택사업과(☎ 02-2147-2896)에
비치 보관